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고 병 준 의원)

의 안 번 호	24-91

발의년월일 : 2024. 8. .
발 의 자 : 고병준, 강동오, 권영숙, 남해석, 안미자, 이상원, 한선미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개정에 맞춰 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연령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와 같게 규정함 (안 제2조제1호)

3. 관계법령

1)「청년기본법」제3조 및 제4조

2)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3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7. 23. ~ 7. 2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”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2.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12. 21.] [법률 제19480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9조(재정지원)에 따라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추진 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이효진
연 락 처	02-3153-8642